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69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02일

발 의 자: 최호정, 고광민, 김길영,
김종길, 김태수, 문성호,
박상혁, 서상열, 서호연,
옥재은, 이병윤,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 · 훈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온열질환 환자가 2022년 110명, 올해(2023.5.20.~7.3.)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2명이 발생함.
- 또 서울의 경우, 30년(1991~2020년) 평균 열대야 일수는 12.5일 이고, 2018년에는 무려 26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진 바 있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어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장기적인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폭염 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다. 폭염 특보 발령 시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라.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피해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특별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대야”란 전날 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 나. 65세 이상의 노인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바. 그 밖에 옥외작업근로자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

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실시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온열질환 의료비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서울특별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폭염저감시설(제2조제4호 관련)

폭염저감시설	정 의
지붕 차열도장 (쿨루프)	지붕 또는 옥상에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도료를 시공하여 실내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안개형 냉각 또는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 (쿨링포그)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면서 미세 물분자의 기화를 이용하여 주위 온도를 낮추는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열성 도로포장	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 방법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도로변과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설치하거나 및 나무를 심어 무더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도 나무그늘 만들기	여름철 도심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나무터널과 같이 나무를 이용해 그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면분수·생태 연못 등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 시설	위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의 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